

해외바이어 초청 물산업 연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「해외바이어 초청 물산업 연수」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.

2025. 7. 2.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-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,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물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및 사업 확대를 유도

2. 신청자격

- 신청자격
 -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(또는 공장)가 소재한 중소·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, 해외 진출(예정)국의 정부기관 실무자 또는 정책 담당자 초청이 가능한 기업
 - ‘2025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’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초청 바이어의 해당국 물분야 현안 발표, 비즈니스 상담 등 포럼 참여가 필수적임
 - ※ 신청 전 바이어와 참석의사 및 일정에 대하여 사전 조율 후 바이어의 연수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함
 - ※ 단, 초청 바이어 일정확인이 늦어지는 경우, 신청서 우선 제출 후 일정 확인 가능

○ 자격제한

- 공고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자
-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

3. 사업기간

- 공고 및 접수 : 2025. 7. 2.~7. 16. (약 2주간)
- 초청연수기간: 선정일('25. 7월 말 예정)~'25. 10.(2개월) / 공식일정 3박 4일
- 사업평가 및 정산보고: '25. 11. 1.~'25. 12. 31.(2개월)
- ※ 사업 선정 및 진행 과정 중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4. 모집 규모: 경기도 중소·중견 물기업 2개사

- 해외진출성과(수출계약, 프로젝트 수행 등) 창출이 유력한 해외 바이어를 보유한 도내 중소·중견 물기업 2개사 ※ 기업당 최대 1,000만 원 한도 내 지원

5. 지원내용

- 지원내용: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비용(항공료·숙박비·통역비) ※ 단가 <별첨> 참고
 - (항공료) 초청 바이어 1인 국제선 이코노미 왕복 항공운임
 - (숙박비) 바이어 국내 체류 숙박비용(공식일정만 해당)
 - (통역비) 바이어 초청기간 내 통역전문요원 활용비 지급
- 지원방식: 결과보고 및 증빙서 확인 완료 후 지급(진흥원→지원기업)
 - 초청에 소요된 경비는 사업 종료 후, 관련 증빙자료(항공권, 숙박비, 통역비

영수증 등) 제출을 통해 실비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

○ 사업내용

- (기업모집) 해외바이어 초청 희망 경기도 중소·중견 물기업 모집
- (서류검토) 참가신청서, 추진계획 등 필수 제출 서류 검토
- (선정평가)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평가 및 기업 선정
- (사업관리) 초청준비 및 진행현황 수시점검, 해외바이어 초청 연수
- (결과보고) 결과보고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완료 후 지급

○ 추진체계 및 절차

- (경기도) 정책 수립 및 재정지원
- 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 사업기획, 사업공고 및 기업선정, 지원금 지급·관리
- (참여기업) 해외 진출국의 정부기관 실무자 또는 정책 담당자 초청

단계	단계별 세부 내용	일정
참여기업 신청·접수	◦ 지원사업 기업 모집공고(약 2주간)	(공고 및 접수) 7.2.~7.16.
↓		
기업선정 평가 (적합성 평가 및 선정)	[기업선정 평가] ◦ 신청서류 접수 후 심사평가 항목에 따른 참가기업 선정	7월 말
↓		
초청 바이어 승인(확정)	◦ 초청 바이어 최종 승인 및 초청준비(출입국일자 등)	8월
↓		
기업연계 초청연수 운영	◦ 3박 4일 일정의 초청연수 (포럼 참여 및 발표 등)진행	9월~10월
↓		
완료점검 및 최종평가	◦ 선정기업: 증빙서류 제출 ◦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: 증빙서류 검토 및 정산	11월~12월

6. 신청 및 제출 서류

- 공고 및 접수기간: 2025. 7. 2.(수)~7. 16.(수), 약 2주간
- 접수방법: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(www.gwisc.or.kr)
 -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> 알림·참여 메뉴 > 기업참여 > 신청·접수
 - 신청문의: 사업 담당자 (☎ 031-985-0521/0891)
- 제출 서류 ※ 원본대조필 날인 必

구분	서식명	제출방법	비고
필수	사업 참가신청서 및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	서식 작성 후 제출	서식1
	서약서	서식 작성 후 제출	서식2
	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	서명 혹은 날인 후 제출	서식3
	수출액 확인 증빙서류	전년도('24년) 수출실적 최소 1종 이상 제출 - 수출·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(한국무역협회) ※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불인정 - 수출신고필증(관세청) - 간접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정보통신)	
	매출액 확인 증빙서류	하단 서류 최소 1종 제출(전년도('24년))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국세청 홈택스) - 표준재무제표증명원/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)	
	인력현황 확인 증빙서류	하단 서류 최소 1종 제출 - 고용보험가입자명부 (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) -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(국민연금공단) ※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	
	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	사본 1부 제출	
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각 사본 1부 제출	
	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	사본 1부 제출	
선택 (해당시)	국영문·기타언어 기업/제품 카달로그	해당 시 제출	
	제품 또는 기술특허/인증/수상 증빙서류 등	해당 시 제출	

7.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

○ 선정방식

- 신청서류 접수 후 심사평가 항목에 따른 참가기업 선정
(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자체 제출 서류검토 후 참가기업 선정)

○ 평가(심사) 기준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본사항	사업장(본점)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사 경기도 소재 • 생산시설(공장) 경기도 소재 	필수사항
기업 경쟁력 (50점)	수출준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(5) • 외국어 홍보물(리플릿 및 브로슈어) 및 동영상 보유 (5) • 해외영업 전담 부서 및 전담자 보유 (10) 	/20
	해외특허 및 인증획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특허 획득 (5점/건, 최대2건) • 해외인증 획득 (5점/건, 최대2건) 	/20
	국내특허 및 인증획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특허 획득 (2.5점/건, 최대2건) • 국내인증 획득 (2.5점/건, 최대2건) 	/10
수출실적 (10점)	전년도 (2024년) 수출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0만불 이상 (10) • 100만불 이상 ~ 200만불 미만 (8) • 50만불 이상 ~ 100만불 미만 (6) • 50만불 미만 (4) 	/10
해외시장 진출의지 (10점)	시장개척 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2년('23~'24) 내 해외전시회 참가횟수 (2.5점/건, 최대 2건) • 최근 2년('23~'24) 내 수출상담회, 시장개척단 및 기타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횟수 (2.5점/건, 최대 2건) 	/10
바이어 초청적합성 (20점)	초청 대상자의 업무 의사결정권한 보유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관급(장관, 차관, 국장) 이상 (20) • 광역자치단체장(지방정부 수장) (15) • 중앙·지방 정부부처, 공공기관 실무자 (10) 	/20
기타 (10점)	경기도 주최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참가경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2년 내 경기도 주최 수출상담회, 초청연수 등 프로그램 참가횟수 (5점/건, 최대 2건) 	/10
총 점			/100

※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 항목(기업경쟁력, 바이어초청 적합성 순)의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

○ 선정기업 최종 발표

- 2025. 7. 30.(수) 센터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

8. 사업진행 관리 및 정산

○ 선정기업은 연수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○ 초청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

○ 사업비의 교부 및 집행, 취소,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름

붙임 1. (서식1) 「2025 해외바이어 초청 물산업 연수」 참가신청서 및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 각 1부.

2. (서식2) 서약서 1부.

3. (서식3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

별첨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및 통·번역료 지급기준 1부.

체류 일정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

-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(공식일정 3박 4일) ※포럼(발표) 일정 포함 필수	
일자	주요내용(방문업체 등)
'25.09.29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국 후 물산업 현장 방문(경기도 ○○시) ○ ○
'25.09.3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025년 경기도 물산업발전 포럼' 참석 및 발표 ○ ○
'25.10.0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○
'25.10.02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○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해당 기간 내 복수업체 방문 예정 여부 (중복지원 방지확인용) □ 예 □ 아니오 </div>	

- 소요예산 ※ 별첨 참고 작성			
구 분	소요액(원)	산출근거	비 고
바이어 초청비	항공료		
	숙박비		
	통역비		
합 계			

신청기업 조사표 (2023~2024년)

구분		인증명		발급기관
인증현황	국내			
	해외			
특허보유	국내			
	해외			
전시회 참가		전시회명	국가 및 도시	기간
해외진출 프로그램 참가		프로그램명	주최자	기간
경기도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 참가		프로그램명	주관부서	기간

※허위사항이 기재된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, 향후 2년간 동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됨

서 약 서

사업명	2025 해외바이어 초청 물산업 연수		
신청기업		총괄책임자	

당사 및 본인은 『2025 해외바이어 초청 물산업 연수』 참가안내 내용을 숙지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소정 지침에 의거, 상기와 같이 동 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. 또한 동 사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,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, 사업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·선정탈락·협약해지·사업중단 등의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.

- 공모안내서 내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, 평가 및 지원제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,
- 제반 현황 및 통계자료가 2025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작성하였으며,
-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,
- 타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지 않으며,
-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
2025년 월 일

회 사 명 :

대 표 자 : (인)

사 업 책 임 자 : (서명)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중

□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서

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서			
1.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			
기업(단체)명		사업자등록번호	
소재지			
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(한강유역환경청) (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)			
2.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			
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		위반사실 없음	위반사실 있음
(공정거래위원회)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)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관할 시군 환경부서, 도 환경부서, 한강유역환경청) 폐기물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진동관리법,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세무서, 시군) 국세기본법,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-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법위반사실 확인)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		동의	부동의
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.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,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,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.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,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, 증빙불가,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처벌 받을 수 있으며,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			
2025년 월 일			
신청인(대표자) :		(서명 또는 인)	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			

□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 동의서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【 목적 】

-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 활용

【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 】

- (지원이력정보)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 정보
-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 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- (인증정보) 기업의 인증·확인정보로서 신청일, 획득일, 유효기간 등

【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 】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【 동의 효력기간 】

-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 - *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
 - 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※ 본 동의 서식의 동의서 장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기업명
대표자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별첨

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및 통·번역료 지급기준

○ 외빈초청여비(숙박비) 지급단가 (참고: 경기도 세출예산 집행기준, 2025)

구분	1인당 단가(1박)	
	숙박비	주빈
	수행원	75,000원

※ 주빈은 직위·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

※ 연회비, 선물구입비, 환송·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.

○ 초청연수 등 국내 통·번역료 지급기준 (참고: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위탁관리지침)

- 회의통역료: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준('25.6.30. 확인) ※부가가치세 10% 별도

① 영어, 독일어, 프랑스어 통역료

차등요율제 구분		1시간까지	6시간까지	6시간 초과시
동시통역 (1인당) 순차통역	졸업 후 2년까지 경력	600,000원	900,000원	영어, 프랑스어 200,000원/시간 독일어 150,000원/시간
	졸업 후 3년부터 경력	700,000원	1,000,000원	

② 아랍어, 스페인어, 러시아어 통역료

차등요율제 구분		1시간까지	6시간까지	6시간 초과시
동시통역 (1인당) 순차통역	졸업 후 2년까지 경력	700,000원	900,000원	아랍어, 러시아어 200,000원/시간 스페인어 150,000원/시간
	졸업 후 3년부터 경력	800,000원	1,000,000원	

③ 말레이-인도네시아어 및 특수외국어

차등요율제 구분		1시간까지	6시간까지	6시간 초과시
동시통역 (1인당) 순차통역	졸업 후 2년까지 경력	700,000원	900,000원	150,000원/시간
	졸업 후 3년부터 경력	800,000원	1,000,000원	

○ 통역비 증빙서류 (참고: 경기도 국제협력사업 위탁관리지침)

- 통역비 산출내역, 통역자 이력서
- 금융기관발급 계좌이체 확인증, 수령확인증(서명 필) 등
- 원천징수 영수증(해당 시) 등

※ 통역전문가(직업 통역가)가 아닐 경우 경력 및 언어 수준에 따라 기준단가의 30~70%